

「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환경 변화와 시민 행정수요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총 정원: 변동없음
 - 집행기관: 1,843명 → 1,841명(△2명)
 - 의회사무기구: 47명 → 49명(+2명)
-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4조의 별표 3)
 - 정원 총계: 변동없음
 - 일반직 계
 - 4급: 12명 → 13명(+1명)
 - 6급 이하: 1,731명 → 1,730명(△1명)
- 한시 정원표(안 제6조의 별표 4)

- 미래도시기획실(4급): 삭제
- 아시아육상추진단(5급): 신설(준속기한 : 2025. 6. 30.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전체 총 정원의 변동없이 실국장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산업, 교육, 복지, 농업분야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구미시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.